



제42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휴대전화 사용 지도 근거 마련 등 〉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44호)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8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스마트기기의 사용 교육(서명옥의원안)	4
2. 휴대전화 사용 지도 근거 마련(서명옥·이인선의원안)	8
【참고자료】 디지털 미디어 규제 관련 해외 사례	15

I. 제안경위

【서명옥의원안】

1. 발 의 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1.
3. 회부연월일 : 2025. 2. 12.

【이인선의원안】

1.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7.
3. 회부연월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명옥의원안】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은 ‘VDT 증후군’과 같은 신체적인 이상 외에도 ‘디지털 격리 증후군’ 등의 인지적 문제를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을 실시하고 있음.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 모든 공립 및 사립

초·중학교에서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지원 기기를 소지는 하되 사용은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 사이의 아동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만 10~19세의 청소년의 경우, 위험군 비율이 40.1%에 달함.

스마트 기기 등의 중독 현상은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인 초등학생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36.2%)이 중학생(29.9%)과 고등학생(20.0%)보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업로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이에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

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과 제20조의4 신설).

【이인선의원안】

현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Ⅲ. 검토의견

1. 스마트기기의 사용 교육(서명옥의원안)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라 수립된 시책을 교육과정 등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0조의3(스마트 기기 사용 교육)</u> <u>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라 수립된 시책을 교육과정 등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입법 배경으로 최근 실시한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여성가족부)¹⁾’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조사대상

1) 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 조사기간 : 2024. 4. 1.(월) ~ 4. 26.(금)
- 참여인원 : 전국 11,746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총 1,249,317명, 보호자 256,699명
 - 스마트폰 과의존 관찰자 진단 : 초등1년 256,699명(보호자)
 - 인터넷·스마트폰 : 초4 388,399명, 중1 441,897명, 고1 419,021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웹 기반의 설문 시스템 운영)
- 조사척도 : 인터넷(K척도), 스마트폰(S척도), 스마트폰 관찰자(유아동관찰자 척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개발
- ※ 본 자료는 치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진단조사의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124만 9,317명 중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22만 1,0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과의존 위험군(A+B-C)	235,687	230,634	221,029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A)	188,978	181,065	174,37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B)	134,832	131,560	127,845
중복위험군(C)*	88,123	81,991	81,190

* 중복위험군 :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면서 스마트폰도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²⁾에 따르면,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모바일+PC) 이용시간은 2019년에 267.2분으로 보고되었으나 2022년에는 479.6분으로 약 1.8배 증가하였고,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는 초·중·고등학생 모두에서 나타났으나 특히 초등학생(4~6학년)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증가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³⁾

참고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은 ‘VDT 증후군’⁴⁾과 같은

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주요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12.1.자 참고

- 모 집 단 : 전국 10대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 표본크기 : 총 2,500명(2,785명 진행 후 가중치를 적용해 보정) ±1.96%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방법 :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면 면접 조사,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사유로 직접 대면하여 조사하는 것을 거절한 학교에 한해 CASI(Computer-assisted Self Interview)를 보조적으로 진행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3일~9월 7일(방학 제외)
- 실사대행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3)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2019년 → 2022년, 증가율): 고등학생(약 5시간 40분 → 약 10시간, +79.9%), 중학생(5시간 → 7시간 40분, +56.4%), 초등학생(2시간 40분 → 5시간 40분, +115%)

4) VDT(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증후군이란 안구건조증, 거북목증후군, 목디스크 등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영상 기기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상을 의미함

신체적인 이상을 겪는 것은 물론, 수면 부족으로 수업 시간에 졸거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고,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다고 느끼면서 실제 세상과 격리되는 ‘디지털 격리 증후군’ 등의 인지적 문제를 겪기도 함.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을 위해 마련된 시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됨.

참고로, 안 제20조의3(스마트 기기 사용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기본법」 제22조의5⁵⁾(2024.12.20. 시행)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⁶⁾」을 수립하여 발표('25.2.10.)한 바 있고, 교육부는

5) 「교육기본법」 [본조신설 2024. 12. 20.]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6)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5. 2월, III. 추진방향, p. 4 참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⁷⁾」에 따라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와의 일관성,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학교교육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목표		디지털 시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디지털 시민 양성
8대 핵심 과제	디지털 역량 체계 마련	1. 디지털 역량 개념 정의 및 프레임워크(안) 마련 △ 디지털 역량 개념 정의 △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안)
		2.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정립·확산 △ 이론적 기반 정립 및 고도화 △ 교사, 학부모, 학습자 대상 홍보 확대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교육	3. (영유아기)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준비 △ 학부모 현장 지원자료 개발 △ 유아 교원 연수 △ 디지털 시범 유치원
		4. [학령기]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 △ 학교내외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 교원 역량 강화 △ 역기능 예방교육
		5. (성인기) 직업세계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인재 △ 지역사회 협력 △ 성인 디지털격차 해소 △ 피싱 예방교육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기반 강화	6. 디지털 역량 교육 접근성 강화 △ 디지털 역량 교육 플랫폼 개편 △ 체계적 자료 제공
		7.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스마트 기기 사용 관련 제도 개선
		8. 디지털 역량 교육 협력체계 구축 △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7)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0. 16.] [교육부고시 제2023-33호, 2023. 10. 16., 일부개정]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학기당 2회 이상(유치원 5차시,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4차시, 고등학교 3차시)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유치원(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초등학교(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중·고등학교(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2. 휴대전화 사용 지도 근거 마련(서명옥·이인선의원안)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①서명옥의원안은 초등학교 재학생의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안 제20조의4 신설), ②이인선의원안은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소지의 제한 및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현행	서명옥의원안	이인선의원안
법률 제20566호 초·중 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생략) <u><신설></u> <u><신설></u>		법률 제20566호 초·중 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u>학교의 장과 교원은</u> <u>학교의 교육과정 운영</u> <u>과 교수·학습 활동의</u> <u>보호를 위하여 필요한</u> <u>경우 학칙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학생의 학</u> <u>교 내 휴대전화 사용</u> <u>·소지를 제한하거나</u> <u>지도할 수 있다.</u> ③ <u>학생은 수업 중에</u> <u>휴대전화를 사용하여</u> <u>서는 아니 된다. 다만,</u> <u>교육 목적의 사용, 긴</u> <u>급한 상황 대응 등을</u> <u>위하여 학교의 장과</u> <u>교원이 허락하는 경우</u> <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 (생 략)	제20조의4(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제2조제1호에 따른 <u>초등학교 재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과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u> 제20조의5 (현행 제20조의3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 ----- ----- -----. ⑤ ----- ----제1항 및 제2항에-----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들은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이 교내에서 휴대전화(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수업 등 교육 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교권 침해를 방지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갈등 발생을 예방하며,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①서명옥의원안⁸⁾은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정하여 ‘교내’의 휴대전화(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②이인선 의원안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소지의 제한 근거를 두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참고로, 프랑스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는데, 프랑

8) 다만, 서명옥의원안은 제20조의4(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를 신설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0862호, 2025. 4. 1., 일부개정, 2026. 3. 1. 시행)으로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조항이 시행 예정임.

스는 2018년 모든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지원 기기를 소지는 할 수 있되 사용은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된 바 있음. <참고자료: 디지털 미디어 규제 관련 해외 사례>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인터넷·SNS 등 과의존, 사이버폭력·불법 촬영 사례 발생 등을 우려하여 적절한 규제를 통한 청소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견도 있는 상황임.

다만, 2023년 9월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⁹⁾)에서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¹⁰⁾한 바 있었으나,

9)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0) (인권위 결정문, '23.4.12.) 22진정0736700·0747600

2024년 10월 7일에 전원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등교 후 휴대 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나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결정례를 변경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음.¹¹⁾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후 10여 년이 지남에 따라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고, 부모와 교사의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교육 행위를 학생인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학칙을 통해 수업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담임교사 승인 등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대안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용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의견과 휴대전화 사용이 오히려 사이버폭력, 학습권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위해가 된다는 의견의 상충이 있고,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학교 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방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규정 개정 권고

11) (인권위 결정문, ‘24.10.7.) 23진정0175100,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 10여 년 만에 기존 결정례 변경 -, 2025. 4. 28.자 참고

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있음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과 동일취지로 학생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제2202777호)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2024.9.24.)되어 있으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²⁾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소셜미디어(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초등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전면 제한하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교내 학생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제한대상을 ‘초등학생’에서 ‘학생’으로(이인선의원안), 교내 사용 제한이 아닌 ‘수업 중 사용 제한(서명옥의원안)’으로 하고, 제한방법,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2)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09.25.)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되나 기존의 고시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SNS 중독의 유해성은 이미 입증되었으므로 교내 사용 금지가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교사들의 올바른 교육을 법의 테두리로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법규 명령적 성격으로서 각급 학교에 대한 구속력이 있어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생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 규정을 두고 있고,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과 최근 초등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명옥의원안)과

‘수업 중 사용 불가’라는 대원칙만 제시하고, 그 외 소지·사용에 대해서는 학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인선의원안)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디지털 미디어 규제 관련 해외 사례

구분	내용
스웨덴	• 어린이와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24.12.) - 2세 미만은 스크린 사용을 피할 것을 권장 - 2~5세 아동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하의 스크린 사용 권장 - 6세 이상의 아동은 하루 2시간 이하의 스크린 사용 권장
네덜란드	• '24년부터 교실에서 교육목적 외에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기기 사용 금지
프랑스	•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 제정('18) - 교육목적, 특수 교육 등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미국	• 일부 주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금지 정책 시행 - 뉴욕,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 캘리포니아, 학교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일부 또는 전면 제한 - 플로리다, 부모 동의 하에 SNS 계정 생성 - 텍사스, 스마트폰을 학습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시간 사용 금지
영국	•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는 것은 허용하되,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발표('21)
핀란드	•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거할 수 있음
호주	• 일부 주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 - 빅토리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19) - 뉴사우스웨일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 퀸즐랜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도록 권장
중국	• 미성년자 스마트폰 이용 일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발표(2023.8.)
대만	• 2세 이하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 전면 금지, 18세 미만의 지속적인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복지 보호법 시행(2015)

자료: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5. 2월, p. 16 참고